

##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재공고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(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)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「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의 신청기간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24. 6. 26.

전 주 시 장

□ 사업기간 : 2024. 4. 9. ~ 2024. 9. 30. (예산소진 시까지)

□ 지원대상 : 전년도(2023년) 매출액 3억원 이하 **소상공인**

\*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서 소상공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\* 『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』 제3조(**소상공인의 범위** 등)

①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**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: 10명 미만**
2. **제1호 외의 업종: 5명 미만**

○ 기존 공고일 기준(' 24.3.18.) 전주시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 
-공고일(' 24.3.18.) 이전 폐업, 타 시도 이전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○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지원

○ 2024년 신규개업자, 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자 제외

○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지원 제외

※ 단,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 시에는 지원

□ 제외업종\*

-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향락업종,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
- 법무·회계 및 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, 병원·(한)약국·금융 등 전문업종
- 택시업종 (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)

\*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(재)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공고 불임.

□ 지원내용 :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% 지원(최대 30만원)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4. 4. 9.(화) ~ 2024. 9. 30.(월) 예산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 : 전주시청 홈페이지 (통합신청지원)를 통한 온라인신청
- 첨부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대표자 통장 사본

□ 지급기간 : 제출서류 심사 후 순차적으로 계좌 일괄 지급 (9월 ~ 12월)

※ 상반기 신청자는 7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

□ 문의 : 전주시 민생경제과 (☎063-281-6682, 6684, 2373)

## 제외업종

## (재)보증 제한업종 [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5]

### ○ 보증 제한업종

| 표준산업분류          | 업종  |
|-----------------|---|
| 561 중           | • (삭제 2010.11.30)   |
| 5621            | • (삭제 2010.11.30)   |
| 56211           | • 일반유흥 주점업 (신설 2010.11.30)  |
| 56212           | • 무도유흥 주점업 (신설 2010.11.30)  |
| 68              | • 부동산업. 다만,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(개정 2010.11.30)  |
| 91121           | • 골프장 운영업   |
| 91291           | • 무도장 운영업   |
| 91249           | •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|
| 9612 중          | •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|
| 46102 중         | • 담배중개업(2009.1.1)   |
| 46107 중         | • 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 (개정 2004.11.11)  |
| 46209 중         | • 잎담배 도매업   |
| 46331           | • 주류 도매업. 단, 주류중개업면허(나)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(단서신설 2010.8.31)(개정 2018.8.21)                  |
| 46333           | • 담배 도매업  |
| 46416 및 46417 중 | • 모피제품 도매업.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(단서신설 2005.7.4)  |
| 64              | • 금융업   |
| 65              | • 보험 및 연금업  |
| 66              | •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. 다만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제외  |
| 75993           | •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(신설 2009.1.1)   |
|                 | •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(업)를 영위하는 경우(신설 2009.1.1)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•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·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·건전화에 반하거나 사치·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(신설 2010.11.30) |

### ○ 재보증 제한업종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표준산업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도박 및 게임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(33409) 중                     | 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장난감 및 취미, 오락용품 도매업(46463) 중              | 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게임용구,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(47640) 중              | 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(47911)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(47912) 중 | 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도소매업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76390) 중              | 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1) 중                | •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(63999) 중                  | •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          |
|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(75999) 중          | •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(58122) 중                  | • 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(91113)                  | •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(96992)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                 |
| 건전 문화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(47859) 중          | • 성인용품 판매점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(75330) 중                    | • 홍신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오락장 운영업(9122)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     |
| •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(96999) 중 | •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투기 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경영 컨설팅업(71531) 중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기획부동산업 <sup>주)</sup>           |

주) (운영형태)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입이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(330㎡, 660㎡ 등)로 분할한 후,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·전화권유 판매)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(시세의 3-5배)에 매도하는 업체

**제외업종**

**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**

| 표준산업분류         | 업종  |
|----------------|---|
| 33409 중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|
| 46102 중        | 담배 중개업  |
| 46209 중        | 잎담배 도매업   |
| 46333          | 담배 도매업<br>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  |
| 46463 중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|
| 47640 중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|
| 47811 중        | 약국, 한약국   |
| 47859 중        | 성인용품 판매점  |
| 47911, 47912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|
| 47993 중        | 다단계 방문판매<br>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 |
| 52991 중        |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   |
| 56211          | 일반유흥주점업   |
| 56212          | 무도유흥주점업   |
| 5821 중        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  |
| 63999 중       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|
| 64             | 금융업   |
| 65             | 보험 및 연금업  |
| 66             |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|
| 68             | 부동산업<br>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<br>- 부동산관리업(6821)<br>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<br>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|
| 76390 중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|
| 711, 712       |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|
| 731            | 수의업   |
| 73904 중        | 감정평가업   |
| 75330 중        | 흥신소   |
| 75993         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|
| 75999 중       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|
| 86             | 보건업<br>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 |

| 표준산업분류  | 업종   |
|---------|--|
| 91113   |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|
| 91121   | 골프장 운영업  |
| 9122 중  |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 |
| 91249  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|
| 91291   | 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 |
| 9612 중 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<br>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<br>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<br>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|
| 96992  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  |
| 96999 중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 |
| 기타      |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|